

채권 양도(환매) 예정 통지

■ 양도(환매)예정채권 명세

(기준일 : 2024.02.25)

| 순번 | 계약번호 | 이름 | 생년 | 성별 | 양도예정일 | 최초대출원금 | 대출잔액 | 기타비용 | 소멸시효 완성여부 | 장래이자 면제여부 | 구분 |
|----|---------|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1 | 7734862 | 조*호 | 1979 | 남 | 2025-06-05 | 1,285,090 원 | 1,151,088 원 | - | 부 | N | 차주 |
| 2 | 7734863 | 조*호 | 1979 | 남 | 2025-06-05 | 3,178,666 원 | 1,708,110 원 | - | 부 | N | 차주 |
| 3 | 7734864 | 조*호 | 1979 | 남 | 2025-06-05 | 2,000,000 원 | 2,000,000 원 | - | 부 | N | 차주 |
| 4 | 7734865 | 조*호 | 1979 | 남 | 2025-06-05 | 5,000,000 원 | 2,513,348 원 | - | 부 | N | 차주 |
| 5 | 7676546 | 조*화 | 1984 | 여 | 2025-06-05 | 1,903,000 원 | 1,903,000 원 | - | 부 | N | 차주 |
| 6 | 7676547 | 조*화 | 1984 | 여 | 2025-06-05 | 235,642 원 | 95,900 원 | - | 부 | N | 차주 |
| 7 | 7676548 | 조*화 | 1984 | 여 | 2025-06-05 | 1,200,000 원 | 1,200,000 원 | - | 부 | N | 차주 |
| 8 | 7676549 | 조*화 | 1984 | 여 | 2025-06-05 | 14,000,000 원 | 6,603,672 원 | - | 부 | N | 차주 |

- 2024년 02월 25일자 남아있는 원금 기준이며 이자(연체이자) 및 기타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본 양도통지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개인채무자보호법")에 따라 발송되었으며 우편물 일괄 발송에 따라 회생 채무자, 파산 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 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에 효력을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- 상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, 채무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-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장래이자 면제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.
- 위 채권 명세상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표번호 1661-4323으로 연락 바랍니다.

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(양도예정인)는 2024년 03월 11일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(양수예정인)로부터 받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25년 06월 05일자로 신한카드 주식회사(양수예정인)에게 재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아울러 위 채권 양도와 관련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양도예정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 제7항에 의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가 양수예정인에게 이전·제공 예정이며, 양수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아래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,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예정인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단,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

채무조정 요청의 절차 및 방법은 한빛자산관리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(<http://www.hanbitamc.co.kr/>)

혹은 본 통지서 [별지]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위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.

채무조정 지원 제도 안내

•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-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1. 신청 대상

• 대상자

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•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
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
- 법원의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 또는 파산·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

•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

-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채권인 경우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
- 금융회사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'거절'인 경우

2. 채무조정 내용

• 채무조정 내용

-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
-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
- 분할 변제
- 변제기간 연장

3. 채무조정 절차

①요청

▷ ②심사 및 결과통지

▷ ③동의

▷ ④채무조정서 작성

▷ ⑤합의

| | | | | |
|--|---|---|--|---|
| <p>(채무자)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</p> | <p>(채권금융회사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. (10영업일 이내)</p> | <p>(채무자)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 (10영업일 이내)</p> | <p>(채권금융회사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.</p> | <p>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</p> |
|--|---|---|--|---|

4.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

• 신청방법

1. 신청서 및 관련서류 준비하여 채권담당자에게 신청
2.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대표번호 02-1661-4323 에서 담당자 확인 후 신청

•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 서류

- 채무조정요청서
- 채무조정안 (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은 아닐 수 있음)
-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)

5. 기타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✓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✓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✓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